

#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기주주총회의사록

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1. 일시: 2023년 2월 23일 오전 10시 00분
2.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 A
3. 출석인원:

주 주 총 수	:	5,262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	:	20,100,000주
출 석 주 주 수	:	74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8,540,131주 (42.49%)

의장인 회사의 대표이사 정상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,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## 보고사항1: 감사보고

의장은 감사로 하여금 감사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## 보고사항2: 제5기 영업보고

의장은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제5기 영업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보고사항을 모두 마친 뒤 부의의안 심의에 들어가다.

## 제 1 호 의안: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

의장은 당 회사의 배당재원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□ 관련 규정

상법 제 461 조의 2(준비금의 감소)
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□ 자본준비금 감액

○ 감액가능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

(단위: 원)

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(A)	자본금 (B)	자본금의 1.5 배 (C)	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(A-C)
74,207,866,689	20,100,000,000	30,150,000,000	44,057,866,689

○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 감액

(단위: 원)

배당처분 예정액 (A)	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가능금액 주) (B)	자본준비금 감액 대상액 (A-B)
2,713,500,000	2,328,111,454	385,388,546

주) 이익잉여금(-4,432,669,487)+전기누적감가상각비초과배당분(5,065,955,034)+당기감가상각비(1,694,825,907)

○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본준비금 385,388,546 원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.

제2호 의안: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

의장은 당 회사의 제5기 재무제표를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### 제3호 의안: 제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

의장은 본 회사의 현금배당에 관하여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### 제4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4-1호: 이준구 후보

4-2호: 나은경 후보

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 이준구, 나은경의 임기가 만료인 바, 재선임하고자 함을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기타비상무이사 이 준 구(1960.05.27)

기타비상무이사 나 은 경(1974.04.15)

### 제5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감사 이윤실의 임기가 만료인 바, 재선임하고자 함을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감 사 이 윤 실(1975.12.02)

### 제6호 의안: 제6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당 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- 아 래 -

- 대표이사 : 총 360만원(매월 60만원)
- 기타비상무이사 : 없음

● 기타

-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.
-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,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.

제7호 의안: 제6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당 회사의 감사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가결되다.

- 아 래-

● 감사 : 총 300만원(매월 50만원)

● 기타

-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.
-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,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.

제8호 의안: [특별결의] 정관 변경의 건

의장은 당 회사의 정관 개정안을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 포함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되다.

조항	개정 전	개정 후
제 26 조 제 2 항 제 18 호	18.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 434 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	18.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 434 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(단, 부투법 시행령 제 33 조 제 3 항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정관 제 38 조 제 3 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한다)
제 46 조의 2	(신설)	제 46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

		<p>[50,000,000,000]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[50,000,000,000]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[3]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
제 46 조의 3	(신설)	<p><b>제 46 조의 3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b>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[50,000,000,000]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[50,000,000,000]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</p>



		<p>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,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[3]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.</p>
부칙	(신설)	<p>부칙&lt;2022. [2]. [23] 개정&gt;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[2]월 [23]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(총회 회의종료시간 오전 10시 35분)

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하다.



2023년 2월 23일

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표이사/의장 정 상 구 (법인인용감)

